

# 불법 유통광고물 특별 단속계획

보도 등에 무단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유통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함

- 집중정비 기간** : '08. 10. 6 ~ 11. 25(50일간)
- 주요정비 대상** : 에어라이트, 입간판,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
- 단속인력 및 장비** : 광고물개선팀장 외 7명(2개조 편성), 차량 2대
  - A조 : 영등포동, 여의도동, 문래동, 당산동, 양평동 지역
  - B조 : 신길동, 대림동, 도림동 지역
- 추진계획**
  - 사전 계도활동 전개(1단계) : '08.10.6 ~ 10.12
    - 점포주, 광고주 : 계도 안내문 제작(10,000매) 및 직접 배포
    - 일반시민 : 영등포 소식지, 지역 케이블TV, 홈페이지 활용 등
    - 매주 수요일 직능단체, 주민, 공무원 등 합동으로 가두 캠페인 실시
  - 중점지역 집중 단속(2단계) : '08.10.13 ~ 11.24
    - 대상지역 : 유흥업소, 상가 밀집지역, 지하철역 주변 등 중점지역
    - 단속방법
      - 가급적 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시 강제철거
      - 상습적인 업주에 행정처분 강화 :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
  - 일반지역 확대 단속(3단계) : '08.11.25 ~
    - 대상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 단속 지속 실시

## 행정사항

- 금일 단속 실적 및 다음날 추진 계획을 매일 18시한 감사담당관 통보

## ※ 2008년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(2008.9월말 현재)

- 단속실적

계	현수막	에어라이트	입간판	비고
72,004	40,943	283	30,778	벽 보 : 809,882 전단지 : 1,005,456

- 행정처분실적

과태료 부과		고발	비고
건수	금액		
1,034건	210,511천원	105건	

#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

생활기초질서확립 위하여 거리의 통행을 방해하는 풍선광고물(에어라이트), 입간판,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 실시 안내입니다 .

■ 다음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, 배포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, 제4조, 제5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.

- 풍선광고물(에어라이트), 입간판, 현수막 첩지물 등 유동광고물
- 청소년 유해광고물 (명함형 전단지 및 벽보)
- ※ 고정광고물 : 지주이용간판, 돌출간판, 옥상간판, 가로간판, 세로간판

《 보도상 입간판》



《 도로상 에어라이트》



《 건물 현수막》



■ 불법광고물의 무단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불법광고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 및 도로에 방치된 광고물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
-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불법 광고로 인한 청소년 탈선

■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기간 : 2008. 10. 6 ~ 11. 24(50일간)

위와 같은 사항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하시기 바라며,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 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**과태료(300만원이하) 및 이행강제금(500만원이하)부과**
- 유동광고물(현수막,에어라이트, 입간판 등) 행정대집행특례에 의거 **즉시철거조치**
- 상습설치자에 대하여는 관할사법기관에 **고발조치**

집중정비기간 후에도 주요도로변 및 이면도로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생활기초 질서확립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오니 자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

■ 불법광고물신고 : 영등포구청 도시디자인과(☎2670-4183~6)

## 영 등 포 구 청 장